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노2908 사기

피 고 인 1. 서동국, (주)제일씨앤아이 이사
 주거 서울 노원구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2. 이○○, 회사원
 주거 안양시 동안구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안양시 동안구 이하생략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기소), 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피고인 서동국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
 법무법인 율○(피고인 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6. 5. 선고 2019고단18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1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증축허가가 취소된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 이○○으로부터 다시 준공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들었고, 임대차계약서에 '강제이행금을 회사가 내주겠다'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막연하게 점포가 가능하지만 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건축물 대장이 불가능한 공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서동국에게 4층 휴게공간에 대한 임대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이○○의 단독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은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을 권한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라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기망하여 소개비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실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 _____

 판사 이○○ _____

 판사 전○○ _____